

##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1항중 단서의 규정을 삭제한다.

제37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"공유재산의 유상대부 또는 유상사용허가와 "를 삽입하고 동조 제3항중 "취득,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"을 "대부 및 사용허가와 폐천부지의 취득 및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"으로 하고 "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"를 익년도 1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39조중 "교환등을 "을 "교환,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"로 한다.

제51조 제3호중 "기획관리실장, 농촌진흥원장 및 공영개발사업단장의 관사 "를 "3급이상 공무원관사 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